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장강박(Compulsive Hoarding)은 강박장애의 한 부류로 과거에는 극소수에만 국한된 희소 질환으로 여겨왔으나, 최근의 국제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저장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저장강박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5조)
- 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조)
- 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동작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